

제 호

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
2. 소 재 지:

3. 대 표 자: (생년월일:)

위 기관을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 제39조제2항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(1차·2차)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
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원자력안전위원회

직인